특허권 양도와 과거 손해배상채권의 이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의 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특허권을 양도받은 후 그 양도받기 전의 과거 침해행위에 대하여 새 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그 양도계약에서 그 손해배상채권을 이전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일반 법리에 대하여는 많이들 알고 있고, 필자도 여기까지는 안다. 본 문건에서는 더 나아가, 추가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허권의 양도, 과거 채권의 양도, 침해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양수인의 소송수행 자격은 서로 구별된다. 검토된 다섯 나라 모두 동반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포괄문구의 해석과 통지의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1] 실무지침은 "명시적 양도조항을 둔다"로 통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리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나라에서 무효이다"로 통일할 수는 없다. 특히 독일은 묵시적 양도 합의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며, 미국도 계약 전체에서 명확한 이전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판단한다.[2]

1 *Minco, Inc. v. Combustion Engineering, Inc.*, 95 F.3d 1109, 1117 (Fed. Cir. 1996) ("Neither statute nor common law precedent, however, requires a particular formula or set prescription of words to express that conveyance.").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3/95/1109/547592/

2 BGH, Urt. v. 14.1.1958 – I ZR 171/56, *Dia-Rähmchen*, Entscheidungsgründe Rn. 19 ("sie bedürfen ... einer besonderen Abtretung"). https://www.anwalt24.de/urteile/bgh/1958-01-14/i-zr-171_56

I. 포괄적 양도문구에 의존하지 않을 것

"대상 특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구만으로 과거 손해배상채권의 취득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은 장래의 배타적 지배를 뒷받침하는 권리이고,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과거 침해행위로 발생한 별도의 재산권이기 때문이다.[3]

미국 *Minco* 판결은 일반적인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문구가 통상 과거 침해청구권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문서에 명시된 과거 침해청구권과 계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 이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포괄문구가 언제나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문구만으로는 과거 청구권까지 포함되었다는 결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4]

독일 Dia-Rähmchen 판결은 과거 손해배상채권이 특허권과 자동으로 이전되는 종된 권리가 아니며 별도의 채권양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별도란 별개의 계약서가 필수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 계약서 안에서도 특허권의 이전과 채권의 이전을 구별하여 합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5]

한국·일본은 일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중국은 채권양도와 계약 해석 법리에 따라 이전 범위를 판단한다. 계약서에는 대상 국가와 특허번호, 과거 침해행위의 기간, 양도인이 보유한 금전채권, 양수인의 자기 명의 행사와 수령 권한을 명시하는 편이 적절하다.[6]

3 *Arachnid, Inc. v. Merit Industries, Inc.*, 939 F.2d 1574, 1579 n.7 (Fed. Cir. 1991).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2/939/1574/31877/

4 *Minco*, supra, at 1117. 계약 전체와 관련 양도문서의 해석에 의하여 과거 청구권 이전 의사를 판단한다.

5 BGH, *Dia-Rähmchen*, supra, Rn. 19–21.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자동 이전을 부정하면서 묵시적 양도 합의의 존재 여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6 한국 민법 제449조–제451조; 日本民法466条–468条;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42条、第545条–第549条。각국 조문에 기초한 계약작성상 권고이다.

II. 권장 계약문구와 시간적 범위

1. 기본 조항

아래는 특정 국가의 법정 서식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조항과 함께 사용하는 권장 초안이다. 계약체결일·거래종결일·각국 이전등록일을 혼용하지 말고, 별지에서 국가별 특허권 이전 효력발생 시점을 확정한다.[7]

① 양도인은 대상 특허권의 이전과 함께, 해당 특허권의 이전 효력발생 시점 전에 이루어진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양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위 양도에는 법률상 양도 가능한 지연손해금, 이자 및 그 밖의 부수적 금전청구권이 포함된다.

② 위 채권의 양도는 계약체결 당시 침해행위 또는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침해자를 특정하였는지, 손해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양도인이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유효하게 소멸·처분한 권리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③ 계약체결일부터 특허권 이전의 효력발생 시점까지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채권도 양도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미리 양도하고, 추가 양도행위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채권 발생 후 또는 거래종결 시 필요한 확인서와 양도서를 작성한다.

④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을 자기 명의로 청구·소송·화해·수령할 수 있다. 양도인은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항요건의 구비, 증거 인도 및 법률상 필요한 당사자 참가 등에 협력한다.

7 한국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日本特許法98条1項1号;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10条。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1조 ;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 https://www.cnipa.gov.cn/art/2020/11/23/art_97_155167.html

⑤ 위 조항은 손해배상채권을 실체적으로 이전하는 조항이며, 단순한 소송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다. 소송절차상 지위는 각국 법률에 따른다.

2. 영문 핵심 문구

Assignor hereby assigns to Assignee, together with the Assigned Patents, all claims and causes of action owned by Assignor arising from infringement of the Assigned Patents occurring before the Patent Transfer Effective Time, whether known or unknown, including the right to sue for and recover damages, interest and other monetary relief legally recoverable and assignable in respect of such infringement.

"hereby assigns"로 현재의 처분 의사를 나타내고, "owned by Assignor"로 양도인의 권리 범위를 한정하였다. 계약상 기준시점과 각국에서 실제 권리가 이전되는 시점이 다르면 국가별 부속서로 조정하여야 하며, 위 문구만으로 국가별 소송수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8]

3. 계약 후 등록 전 기간

한국·일본·중국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이 권리이전의 효력요건이지만, 그것이 등록 전 양도계약의 채권적 구속력까지 전부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등록 협력의무 등 계약상 의무와 특허권 자체의 이전을 구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특허권 이전과 다른 시점에 양도하기로 정할 수도 있다.[9]

[8] 35 U.S.C. § 261 (서면에 의한 특허권 양도 및 양도기록); *Minco*, supra, at 1117 (양도계약 해석에는 주 계약법 적용).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261

[9] 한국 특허법 제101조 및 민법 제449조; 日本特許法98条、民法466条;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10条及《民法典》第502条、第545条。특허권의 물권적 이전효과와 계약상 의무 및 별도 채권양도를 구별한 해석이다.

예컨대 3월 1일 계약, 4월 1일 이전등록인 경우 "계약일 전 채권"만을 양도하면 3월 중 발생한 채권이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독일에서는 등록일이 항상 실체적 이전일은 아니므로, 등록일만을 기준으로 과거 채권을 구획하여서도 안 된다.[10]

III 양도채권의 회수가능성과 가격을 검증할 것

유효한 채권양도와 가치 있는 채권의 취득은 다르다. 양도만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하거나 종전의 면제·화해·변제·상계 등 항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발생한 채권의 한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한다.[11]

일본 지재고재 2014년 12월 17일 판결은 과거 특허권 보유기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와 내용증명 통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청구에 대하여 종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소멸시효 항변을 허용하였다. 이는 "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직접적인 사례이다.[12]

미국에서는 35 U.S.C. § 286의 제소 전 6년 배상제한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이를 양도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6년의 권리행사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3]

[10] 35 U.S.C. § 261; BGH, Urt. v. 7.5.2013 – X ZR 69/11, *Fräsverfahren*, Leitsätze 2a–2b. https://urteile-gesetze.de/rechtsprechung/x-zr-69-11 ; 한국 특허법 제101조; 日本特許法98条; 중국 전리법 제10조.

[11] 민법 제451조; 日本民法468条·469条;《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548条·第549条; BGB §§ 404, 406. 각 조문의 항변 존속 범위와 예외는 서로 다르므로 개별 적용을 확인한다.

[12] 知財高判平成26年12月17日·平成25年（ネ）第10025号、67–68頁（「上記債権譲渡の事実を対抗することができる。」）。https://www.courts.go.jp/assets/hanrei/hanrei-pdf-84799.pdf

[13] 35 U.S.C. § 286. 원칙적으로 소 또는 반소 제기 전 6년을 넘는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제한한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286

또한 § 287(a)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인 또는 관련 실시권자의 특허표시와 실제 침해통지의 이력이 과거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특허권 양수와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종전의 표시·침해통지 흠결이 소급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14]

검증 항목	요구할 자료와 계약상 처리
기간과 시효	침해 시점, 인지 시점, 최고·제소·채무승인 이력 및 시효 관련 합의를 확인한다.
권리의 존재와 귀속	특허별 양도연혁, 종전 채권양도, 공동권리자·실시권자 관계를 확인한다.
항변과 처분	라이선스, 화해, 면제, 불제소약정, 변제 및 중복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손해와 증거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산정자료, 판매·이익 자료, 침해 증거를 인도받는다.
가격과 위험분담	과거 채권의 대가를 구분하고, 선급금·실제 회수액 연동금·반환 또는 보상조건을 협상한다.

위 표는 거래 실사를 위한 권고이다. 채권의 존재·처분 여부에 관한 진술보장과, 소송 승패·손해액·채무자 자력에 관한 회수위험을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 보완문구: "양도인은 별지에 공개한 사항 외에는 양도대상 채권을 양도·면제·화해·변제받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시효, 침해통지 및 권리행사 이력에 관하여 보유한 자료를 모두 제공한다. 위 진술보장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약정된 범위에서 배상하되, 소송 결과와 채무자의 지급능력은 별도 보장조항이 없는 한 보장하지 않는다."

[14] 35 U.S.C. § 287(a). 적용대상 사건에서 특허표시 또는 실제 침해통지의 유무가 배상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287

IV. 묵시적 양도에 관한 비교법적 판단

자동 이전, 묵시적 합의, 명시적 문구의 해석은 구별된다. 자동 이전은 별도의 의사합치 없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묵시적 양도는 당사자의 행동과 거래 사정에서 별도의 채권양도 합의를 인정하는 경우이며, 문언 해석은 작성된 조항의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이다.[15]

국가	묵시적 양도와 포괄문구의 평가
미국	특허권 양도만으로 추론할 수 없다. 과거 청구권의 이전 의사가 계약 전체에서 명확해야 한다. 특정 정형문구는 불필요하다.
중국	일반 민법은 묵시적 의사표시와 계약의 종합적 해석을 인정한다. 다만 특허권 이전만으로 과거 배상청구권까지 이전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일본	채권양도에 명시적 서면을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합의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과거 채권을 포함한 합의의 입증은 별개이다.
독일	별도 채권양도 합의가 필요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특허권 이전 자체와 과거 채권의 자동 승계는 부정된다.
한국	일반 채권양도 법리상 묵시적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허권 이전등록이나 포괄문구만으로 그 합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근거는 *Arachnid*와 *Minco*이다. "특정 문장이 필요 없다"는 *Minco*의 설명을 "특허권 양도만으로 과거 청구권의 묵시적 이전을 인정한다"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계약에 나타난 명확한 이전 의사의 확인이 여전히 필요하다.[16]

[15] BGH, *Dia-Rähmchen*, supra, Rn. 19–21.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자동 이전을 부정하면서 묵시적 양도 합의의 존재 여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16] *Minco*, supra, at 1117. 계약 전체와 관련 양도문서의 해석에 의하여 과거 청구권 이전 의사를 판단한다.

독일의 근거는 Dia-Rähmchen 판결이다. 법원은 별도 양도가 필요하다고 한 뒤, 당해 계약에 묵시적 양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묵시적 양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구체적 사건에서 그 합의가 입증되는지는 별개임을 보여준다.[17]

중국 민법전 제140조는 명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허용하되 단순한 침묵의 효력은 제한하고, 제142조 및 계약편 통칙 사법해석 제1조는 문언·목적·관행·협상 및 이행행위를 종합하도록 한다. 따라서 묵시적 양도의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특허권 양도만으로 과거 청구권이 승계된다는 특칙을 뜻하지 않는다.[18]

중국의 2025년 12월 의견수렴안 제9조도 양도인의 수권에 기초한 양수인의 이전등록 전 침해행위에 대한 제소를 다룬다. 의견수렴안은 현행의 확정 규범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명시적 서면이 언제나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19]

한국과 일본의 묵시적 양도 가능성은 일반 채권양도 규정에서 도출되는 해석이다. 이를 과거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묵시적 양도를 추정하는 특허법상 확립된 판례법칙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묵시적 합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계약작성 단계에서는 이를 입증해야 하는 위험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20]

17 BGH, *Dia-Rähmchen*, supra, Rn. 19–21.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자동 이전을 부정하면서 묵시적 양도 합의의 존재 여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18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40条、第142条、第466条；法释〔2023〕13号第1条。계약문언 외에 체결 배경·협상 과정·이행행위 등을 참작한다. https://www.cac.gov.cn/2020-06/01/c_1592561777268319.htm

19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三）（征求意见稿）"，2025年12月20日，第9条。의견수렴안이며 확정 시행 규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84511.html

20 한국 민법 제449조·제450조; 日本民法466条·467条。특허권의 이전만으로 묵시적 채권양도를 인정한다는 직접 판례에 의한 명제가 아니라, 일반 채권양도 법리에 따른 해석이다.

V. 침해자에 대한 통지는 언제 필요한가

"통지가 필수인가"라는 질문은 당사자 사이의 양도 성립, 침해자에 대한 효력, 다른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 및 소송 전 절차를 나누어 답해야 한다. 특허권 이전등록은 과거 금전채권의 양도통지를 일반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21]

국가	당사자 간 성립에 통지 필요	침해자 상대 효력과 실무 조치
미국	연방 특허법상 일반적 요건 아님	§ 261은 채권양도 통지를 정하지 않는다. 적용 주법·계약을 확인한다. § 287의 침해통지는 별개이다.
중국	아니오	민법전 제546조상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통지가 필요하다. 사법해석 제48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아니오	민법 제467조상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채무자 외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원칙이다.
독일	아니오	통지가 일반적 대항요건은 아니다. 미통지 시 선의의 종전 채권자 상대 변제 보호 및 § 410의 증서 문제에 유의한다.
한국	아니오	민법 제450조상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채무자 외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1. 미국과 독일

미국에서는 한국 민법 제450조와 같은 연방 특허법상의 통일된 채권양도 통지요건이 존재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 261의 양도기록과 § 287의 실제 침해통지는 각각 다른

21 민법 제449조–제451조. 제450조 제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도이며, 채무자 통지의 구체적 효과는 적용 주법과 계약을 추가 확인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통지가 필요 없다"는 단정도 피해야 한다.[22]

독일에서는 § 398에 의한 채권양도가 통지 없이 성립한다. 그러나 § 407은 양도를 모르는 채무자의 종전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보호한다. § 410은 양수인의 양도증서 교부와 이행거절 문제를 규율하므로,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양도인의 서면 통지와 적절한 양도증명서 확보가 유용하다.[23]

2.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지가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침해자가 채무자로서 양도를 승낙하면 통지를 대체할 수 있고, 반대로 침해자의 승낙이 없어도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을 혼동하여 침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24]

한국에서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 명의로 통지하고 도달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양수인이 통지를 대신할 경우에는 양도인의 대리권을 명확히 부여받아 그 지위를 표시하도록 한다.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므로, 단순히 모든 통지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서는 안 된다.[25]

22 35 U.S.C. § 261 (서면에 의한 특허권 양도 및 양도기록); *Minco*, supra, at 1117 (양도계약 해석에는 주 계약법 적용).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261

23 BGB § 407 Abs. 1, § 410.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무자의 종전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보호하고, 양도증서의 교부와 이행거절에 관한 규칙을 둔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__407.html ;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__410.html

24 日本民法466条、467条、468条。467条1項:「譲渡人が債務者に通知をし、又は債務者が承諾をしなければ」。https://laws.e-gov.go.jp/law/129AC0000000089

25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양수인이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본에서도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구조는 같다. 법인 채권양도등기 등 특별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가 대체하는 대항요건과 채무자에 대한 추가 통지·증명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26]

3. 중국

중국 민법전 제546조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권양도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자체가 반드시 무효라는 뜻은 아니다.[27]

2023년 계약편 통칙 사법해석 제48조 제2항은 양도인이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직접 제소하고 법원이 양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양도의 대채무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 전 통지가 언제나 제소의 필수 선행요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28]

다만 미통지로 채무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액에서 공제될 수 있고, 통지 전 종전 채권자에게 한 변제가 보호될 수 있다. 계약에서는 알려진 침해자에게 양도인이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고, 나중에 확인되는 침해자에 대한 통지 협력의무도 존속시키는 것이 적절하다.[29]

통지서에는 특허번호, 대상 침해행위와 기간, 양도일, 양도인·양수인, 양도대상 채권 및 지급 상대방을 특정한다. 계약서 전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범위의 발췌본이나 별도

26 日本民法467条;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4条。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ja/laws/download/3464/09/h10Aa001040304en13.0_r01A6.pdf

27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40条、第142条、第545条至第549条。第546条: “未通知债务人的，该转让对债务人不发生效力。” https://www.cac.gov.cn/2020-06/01/c_1592561777268319.htm

28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合同编通则若干问题的解释》，法释〔2023〕13号，第48条第2款（“自起诉状副本送达时对债务人发生效力”）。2023年12月5日起施行。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419382.html

29 法释〔2023〕13号，前揭司法解释，第48条第1款·第2款。

양도확인서를 첨부하고, 발송과 도달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한다. 이는 국가별 법정요건과 별도로 권고하는 실무 조치이다.

최종적으로 실무자는 명시적 채권양도 조항, 과거 채권의 가치 실사, 중간기간의 처리, 국가별 통지 및 증명서류를 거래종결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송 목적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체적 권리이전 없이 소송만 수행시키는 구조는 원고적격 또는 소송신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30]

[3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현행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 여부는 양도 경위·방식·제소까지의 간격·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https://www.law.go.kr/판례/(2000다4210)